

단국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운영 내규

제정: 1999년 2월
개정: 2003년 2월
개정: 2005년 2월
개정: 2010년 2월
개정: 2016년 8월
개정: 2018년 1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특수교육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 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3조 (전공과목 이수) 석·박사과정 학생은 전공과목 중에서 세부전공과 일치하는 3개 과목 이상(9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제4조 (보충과목 이수) ① 석사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보충과목은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이수영역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보충과목은 석사과정의 공통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수할 보충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

제3장 자격시험

제5조 (응시자격) 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의 응시자격은 전공 18학점(연구 지도학점 제외) 이상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의 응시자격은 전공 27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 ③ 석·박사 통합과정생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의 응시자격은 전공 45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제6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① 일반대학교 특수교육학과의 종합학력시험의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면제 기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SCI급[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논문게재		1편당 3과목 면제 (연구방법 관련 과목 제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게재	1편당 2과목 면제	1편당 1과목 면제 (연구방법 관련 과목 제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게재	1편당 1과목 면제	

- ② 면제 기준 논문 편수에서 1편은 100%의 연구실적(단독 또는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논문 1편)을 의미한다.
- ③ 제12조 2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을 면제 판정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100%의 연구실적을 면제 기준 논문 1편으로 인정한다.
- ⑤ 면제 기준 논문은 해당 과정 입학 이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
- ⑥ 박사과정생의 최대 면제 인정 과목의 수는 3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면제 과목 대상에 연구방법 관련 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종합학력시험 응시 과목) 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의 과목은 이수한 전공과목에서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으로만 한정하여 선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의 과목은 이수한 전공과목에서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으로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동일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2개 과목 이상으로 한정하여 선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의 과목은 이수한 전공과목 중 세부전공 2개 과목, 타세부전공 1개 과목, 연구방법 1개과목(특수교육연구방법 과목은 필수(50점) + 나머지 3개의 연구방법 과목 중 택1(50점))으로 한다.

제8조 (종합학력시험 시행 방법 및 채점) ① 종합학력시험 시행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종합학력자격시험 4과목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며,

종합학력시험 중 1과목은 『연구방법론』에 관련 된 시험으로, 본 과목을 필수로 응시하여야 한다.

- ③ 『연구방법론』 과목의 종합학력시험은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종합시험관리 위원회에서 출제하고 채점하며, 종합시험관리위원회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3인 내외의 특수교육과 교수로 구성한다.
- ④ 『연구방법론』의 시험 문제는 공통문제와 선택문제(실험 설계 및 통계, 단일 대상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로 구성되며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다수의 질문 중 일부를 원생들이 선택하여 답하는 형식을 취한다. 실제 발표된 국내외 논문들을 시험에서 제시하고 이 논문들의 연구방법, 자료 분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여 응시생들이 『연구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⑤ 시험 시간은 과목 당 석사는 90분, 박사는 100분으로 한다.
- ⑥ 종합학력시험 신청자는 시험 신청 전에 지도교수와 상의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완료 후 대학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응시과목의 합격점수는 매 과목당 80점 이상으로 한다.
- ⑧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응시자가 응시과목을 신청하여 재시험을 치른다.

제9조 (외국어자격시험 과목 및 면제기준) 외국어자격시험의 과목과 면제 기준은 일반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4장 학위과정

제10조 (석사학위 취득방법)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대체 방안을 적용하지 않고 학위논문만으로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개설 이전 특수교육학과 청각언어장애아교육전공과 언어병리전공 수료생의 경우 언어병리학과 내규에 따른다.

제5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1조 (학위논문의 계획서 발표 및 예비발표) ① 학위논문 심사에 앞서 논문계획서 발표(Proposal)와 예비발표(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계획서 발표는 논문지도교수의 주관 하에 실시한다.
③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계획서 발표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인 이상(외부

심사위원 2인까지 총 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표 결과는 정해진 양식(계획서 결과 보고서)으로 주임교수에게 보고한다. 중간발표 1개월 전까지 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중간발표를 진행한다.

- ④ 논문계획서 발표(Proposal)의 시행은 방학 중에 또는 학기 중에 시행하되 중간발표 학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논문계획서와 논문중간발표는 같은 학기에 할 수 없다.
- ⑤ 중간발표는 학위논문의 본 심사에 앞서 시행되는 학과 내의 사전심사로, 대학원 주임교수가 정한 시기에 전체 학과 차원에서 공식적인 중간발표를 한다. 중간발표 시행은 재학생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⑥ 중간발표는 4월과 10월에 열리며, 자세한 일정은 회의를 통해 주임교수가 공지하도록 한다.
- ⑦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논문은 최소한 중간발표일 7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 ⑧ 박사과정생의 중간발표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위한 실제적 연구나 자료 수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결과 해석을 제시하고 논의의 진행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⑨ 박사과정생이 논문 중간발표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자료 수집 방법에 관계 없이 연구 결과물이 모두 수합된 상태이어야 하며, 중재 논문인 경우에는 사후 검사 혹은 유지검사 등, 모든 중재와 검사가 끝난 상태이어야 한다. 중간발표 신청자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발표를 할 수 없다.

제12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조건)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원생은 100% 이상의 연구실적(단독 또는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논문 1편 이상)이 있어야 하며,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을 조건으로 한다.

- ②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은 단독연구(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2인 연구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70%, 2인 연구의 공동저자 50%, 3인 연구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50%, 3인 연구의 공동저자 35%, 4-9인 연구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30%, 4-9인 연구의 공동저자 25%, 10인 이상 연구는 역할 구분 없이 10%로 인정한다.
- ③ 제6조 종합학력시험 면제 인정된 연구실적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조건 연구실적으로 중복 인정 될 수 있다.

제6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3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위임 포함)의 참여(위임 포함)와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18.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